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김예지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887호)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984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4
-----------------	---

I. 개요

1.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88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24.

(3) 회 부 일 : 2024. 12.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산은 개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유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 중의 하나임.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재산관리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 없이는 경제적 착취 등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발달장애인의 이런 취약성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부모 역시 자신들의 고령 등으로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시점 또는 사후에 발달장애 자녀에게 상속시킬 재산의 관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의 소득 또는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재산의 사용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와 욕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및 제41조제7항 신설).

2.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98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소병훈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26.

(3) 회 부 일 : 2024. 12.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금전 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활비를 단기간에 모두 소비하거나 사기·갈취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의 권리·욕구·희망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관리·활용하기가 어려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발달장애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발달장애인이 그의 주거, 건강, 교육, 휴식 기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소유한 재산의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및 제41조제7항 신설).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두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및 그 운영의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41조 제7항 신설).

현행	김예지의원안	소병훈의원안
<신설>	제29조의4(재산관리 지원) ① 국가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이하 “발달장애인등”이라 한다)와 계약을 통해 약정한 발달장애인등의 소유 재산을 이전받아 그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계약기재사항, 재산 관리·운용의 범위와 방	제29조의4(재산관리 지원) ① 국가는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달장애인이 주거, 건강, 교육, 휴식 등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이 소유한 재산의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	김예지의원안	소병훈의원안
제41조(위임·위탁) ① ~ ⑥ (생략) <신설>	<u>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제41조(위임·위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29조의4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를 위탁할 수 있다.</u>	<u>자와 제공받는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u> ③ <u>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절차, 지원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계약 기재사항, 재산관리·운용의 범위와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제41조(위임·위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제29조의4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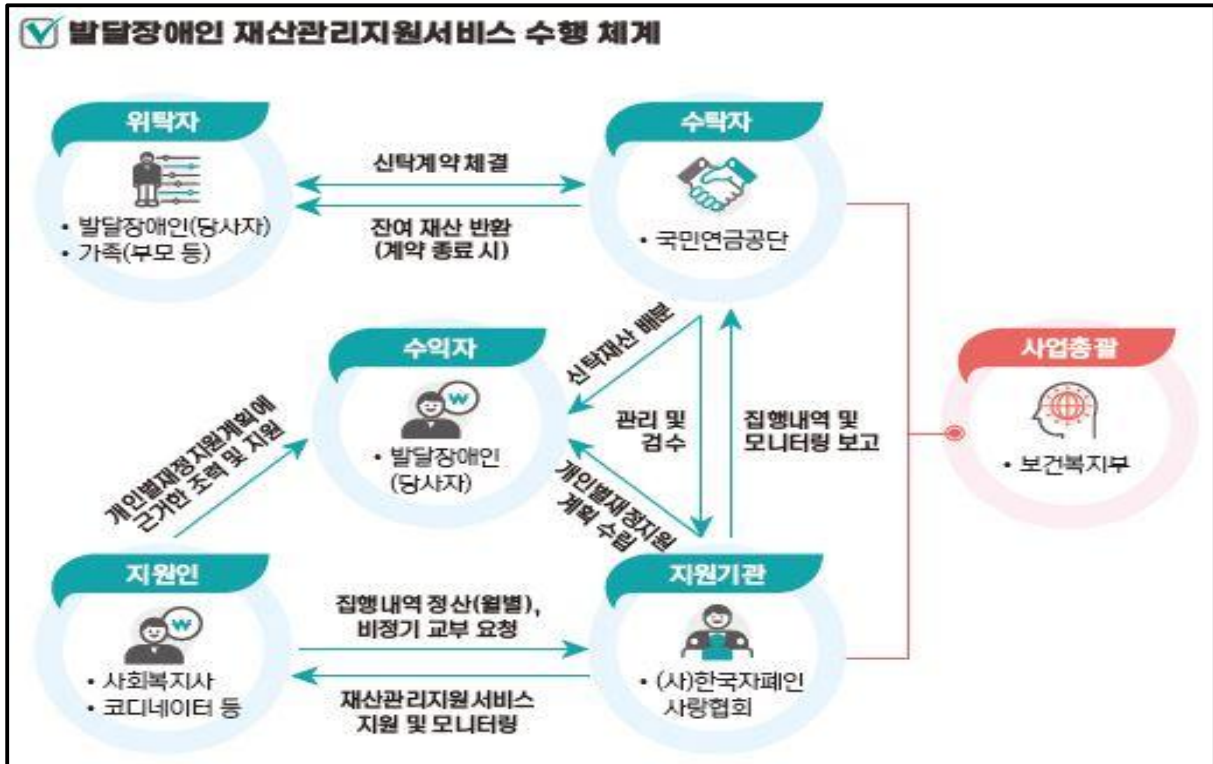
현행	김예지의원안	소병훈의원안
		<u>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u>

2. 검토의견

- 발달장애인 가정의 재산관리에 대한 지원과 경험은 부모 사후 이전에 시작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실제로 체득해야 할 필요성이 큼.¹⁾
-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을 수탁기관으로 하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왔음.
 - 동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소득 또는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발달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신의 욕구와 취향, 필요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 국가 책임 아래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탁계약에 기반하여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재산 ‘관리’ 및 ‘사용’ 지원 사회서비스라 할 수 있음(참고자료 1: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요).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수행 체계 >



자료: 보건복지부

- 참고로, 동 사업에 참여한 발달장애인(총 6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약 90%가 만족하였고, ‘다른 발달장애인에게 추천’ 및 ‘계속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89%, 87.7%로 보고되어, 현장에서의 만족도와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

□ 두 개정안은 이 같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운영·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달장애인의 재산 또는 공적·사적 이전소득을 착취나 경제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당사자의 수요와 욕구에 맞게 적절히 관리·활

2) 국민연금공단·전북대학교, (2023).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한 연구

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이러한 서비스를 민간 금융기관이 아닌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공적기관에서 제공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 다만, 두 개정안은 같은 취지를 법률로 조문화하는 과정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 간 주요 차이 >

구분	김예지의원안	소병훈의원안
서비스 절차 및 내용	• 국가는 <u>발달장애인의 적절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와 계약을 통해 약정한 발달장애인등의 소유재산을 이전받아 그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안 제29조4제1항).</u>	• 국가는 <u>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달장애인이 주거, 건강, 교육, 휴식 등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이 소유한 재산의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안 제29조4제1항).</u>
		• <u>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안 제29조4제2항).</u>
서비스 관련 필요 사항	• <u>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계약기재사항, 재산관리·운용의 범위와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안 제29조4제2항).</u>	• <u>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절차, 지원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계약 기재사항, 재산 관리·운용의 범위와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안 제29조4제3항).</u>

구분	김예지의원안	소병훈의원안
위탁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29조의4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위탁할 수 있다(안 제29조4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u>국민연금법</u>」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제29조의4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안 제29조4제4항).

- 첫째, 김예지의원안의 경우는 ‘이용절차, 계약기재사항, 재산관리·운용의 범위와 방법, 비용부담’을

소병훈의원안에서는 ‘제공 절차, 지원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계약 기재사항, 재산 관리·운용의 범위와 방법, 비용부담’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이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을 적용받는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같은 취지에서 계약 해지의 자유 보장 및 서비스 종료 후 수탁재산이 착취 등에 쉽게 노출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 해지 절차 및 종료’에 관한 사항을 위임사항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³⁾

- 둘째, 소병훈의원안은 김예지의원안과 달리 국민연금공단을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위탁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업무의 일부를 다시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현재 실시 중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위탁기관으로 신탁계약 체결 등 전반적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개인별재정지원계획 등 현장 업무의 일부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서 수행하는 체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기관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김예지의원안과 비교하여 두 개정안 중 어떤 방식이 효율적인지 논의가 필요함.

- 셋째, 개정안이 현재 실시 중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고려하면, 이미 동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금전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모 사후에 대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보호장치로 2022년 5월부터 재산관리 지원이 도입되었음.

3) 2024년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중 최보윤의원 지적 내용을 반영함.

- 재산관리 지원에 대한 근거 조문 및 위탁조항의 신설로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됨.

나. 한국자폐인사랑협회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발달장애인의 재산(공공부조 등)관리를 관리·감독·지원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지원 의무를 국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해야 할 것임.
-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수행기관을 공공기관으로만 한정하는 경우, 민간에서 수행하는 경우,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지며 서비스의 양을 제한시킬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요>

☐ 사업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18.9월), 에 공공신탁 도입으로 부모 사후 대비 소득보장 제도 마련 명시

☐ 시범사업 개요

- (사업대상)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총 141명
- (사업기간) '22.5월 ~ 계속
- (사업주체) 보건복지부(총괄), 국민연금공단(신탁기관), 비영리단체(지원기관)
- (사업예산) 국비 지원('25년 460백만원, 전년 동)
- (사업 내용)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재산관리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을 신탁자로 하여 신탁계약에 기반한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제공
 - 신탁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출 관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
- (사업성과) 신탁 규모 약 32억 원 관리 및 사용지원 8,422회 제공

< 신탁재산 관리 현황 >

(기준일: '24.12.26. 단위: 건, 천원)

구분	계약체결(건)	신탁총액(A)	배분금액(B)	잔액(A-B)
계	127	3,209,350	1,024,300	2,185,050
안심보관	37	731,225	-	731,225
사용지원*	90	2,478,125	1,024,300	1,453,825

* 세부내역: 총 8,422회 - (생활비) 3,280회, (용돈) 4,022회, (적금) 166회, (공과금) 795회, (의료비) 81회, (주거) 33회, (교육) 13회, (문화여가) 14회, (금융) 18회

자료: 보건복지부